

- 울주 꿈꾸는 청년대장간 - 입주기업 모집 공고

청년(예비)창업기업에게 제조 공간을 제공하여 사업 성장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「울주 꿈꾸는 청년대장간」 입주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청년 창업기업들의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.

2025년 11월 11일
(재)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

1 모집개요

- 접수기간 : 공고일 ~ 2025. 12. 8.(월), 17:00
- 대 상 : 청년대장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, 주 사업장을 이전할 수 있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
 - 제조업을 영위하는 7년 미만*의 청년(예비)창업기업
 - * 「중소기업 창업지원법」 제25조 제4호에 의한 업종은 창업 10년 이내 가능
 - 대표자가 청년**이거나 직원(2명 이상)의 50% 이상이 청년인 기업
 - ** 「울산광역시 청년창업지원 조례」에 의한 청년연령 : 39세 이하(1986. 1. 1. 이후 출생자)
- 접수방법 : 이메일 접수(windglow@ubpi.or.kr)
- 모집규모 : 1개사

호실	전용면적	입주	소재지
103	A : 68.51㎡(20.7평) B : 85.50㎡(24.3평)	2026년 1월 중	울주군 웅촌면 오복길 17-1

- 지원기간 : 입주 후 최대 3년(매년 심사를 거쳐 연장여부 결정)
 - 입주 후 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청년대장간 입주자격을 상실하거나, 연장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입주 연장 불가(퇴거)

○ 울주 꿈꾸는 청년대장간 전경



2 지원사항

○ 지원내용

구 분	세 부 내 용
공간제공	- 제조업 창업공간 무상 임대지원 - 최대 3년 입주 가능 ※ 1년 단위 전대차 계약 체결 후 매년 심사를 거쳐 연장여부 결정
사업화 지원	- 마케팅, 멘토링, 컨설팅, 판로개척 지원 등 ※ 단, 사업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네트워킹 지원	- 정기 간담회, 사례탐방, 네트워킹 데이(교류의 날) 지원 등

○ 기업부담 사항

구 분	세 부 내 용
보증금	- 금1,000,000원(금일백만원) ※ 퇴거시 반환 ※ 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입금 시, 퇴거 조치
관리비	- 전기료, 수도료 등 시설 사용에 따른 실비 자부담
협의회 회비	- 입주협의회 공동 경비
기 타	- 개별 화재 보험료, 인터넷 사용료,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·허가, 공간 사용에 필요한 일상적인 유지보수, 기타 시설 및 각종 사업 추진 관련 비용 등

3 입주자격

- (연령) 대표자가 39세 이하의 청년인 기업. 단, 직원(2명 이상)의 50% 이상이 청년인 기업도 지원 가능
 - ※ 「울산광역시 청년창업지원 조례」에 의한 청년연령 : 39세 이하(1986. 1. 1. 이후 출생자)
- (업종)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자체 연구개발 또는 디자인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※ 단순 유통기업 제외
- (업력) 창업 7년 미만의 청년(예비)창업기업. 단, 신산업 창업 분야의 경우 10년 이내 ☞ 붙임 2 참조

「중소기업 창업지원법」

제25조(유망 신산업·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)

-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2조제3호에 따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**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**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**10년 이내의 범위**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- (사업장 이전 및 활용) 울주 꿈꾸는 청년대장간을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주소지로 등록하고, 실제 창업활동 및 업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업
 - ※ 단순 창고·물품보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
 - ※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사업장 소재지를 울주 꿈꾸는 청년대장간으로 이전(등록)해야 함
- (우대사항) 초기창업기업(3년 미만), 최근 2년간 울주군 창업사업 참여자

결격사유 (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)

- 「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
- 기 수혜기업 또는 계약일 기준 정부·지자체 등으로부터 유사·동일내용의 사업을 지원받는 경우
- 대표자가 신청기업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
- 현재 휴·폐업 중이거나 부도상태인 기업, 4대 사회보험료 또는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
-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
- 최근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기준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
- 파산·화의·법인회생·개인회생절차 또는 회사정리개시 결정, 경매절차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
- 정부지원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서 참여제한, 지원중단, 환수 등 제재조치를 받는 자(기업)
- 「근로기준법」제42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(기업)
- 최근 3년간 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9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으로 지정된 경우
- 최근 3년간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위반으로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
- 폐수, 소음, 진동, 공해를 유발하는 기업
- 타 기업을 대신하여 입주 신청하거나, 에이전트를 통해 신청한 경우
- 신청 또는 성과점검 과정에서 증빙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위·변조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
- 기타 사업 총괄기관 및 수행기관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

4

제출서류

필수여부	제 출 서 류 (※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)	비고
공통 필수	① [서식 1] 울주 꿈꾸는 청년대장간 운영사업 입주신청서 1부	서식집 참고
	② [서식 2] 울주 꿈꾸는 청년대장간 입주 운영계획서 1부	
	③ [서식 3] 울주 꿈꾸는 청년대장간 참가서약서 1부	
	④ [서식 4] 개인(기업)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 1부	
	⑤ [서식 5] 대표자 이력서 1부	
	⑥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(주민번호 뒷자리 생략)	정부24 gov.kr
	⑦ 대표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	국민건강보험공단 nhis.or.kr
	⑧ 4대보험 완납증명서, 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※ 개인 : 개인납세증명 / 법인 : 법인납세증명(※ 유효기간 이내)	정부24 또는 홈택스 gov.kr, hometax.go.kr
	⑨ 사실증명원(사업자등록사실여부 또는 총 사업자등록내역) 1부 ※ 폐업한 적이 있는 경우 '폐업사실증명원' 1부 추가 제출	홈택스 hometax.go.kr
	⑩ 7분 발표분량 PPT ※ 입주 운영계획서에 기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	자유양식
기창업자 필수	⑪ 창업기업 확인서 1부 (발급 10일 이상 소요)	창업기업확인시스템 cert.k-startup.go.kr
	⑫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	정부24 또는 홈택스 gov.kr, hometax.go.kr
	⑬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	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
	⑭ 2024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1부	정부24 또는 홈택스 gov.kr, hometax.go.kr
	⑮ 2024년도 매출 및 2025년 1~10월 매출 증빙 서류 1부 (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, 원천징수영수증,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, 신용카드 매출합계표 등)	홈택스 등 hometax.go.kr
선택 (해당자)	⑯ (법인인 경우)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	인터넷등기소 iros.go.kr
	⑰ (대표자 청년연령 초과시) 최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	정부24 또는 홈택스 gov.kr, hometax.go.kr
	⑱ 최근 2년간 울주군 창업사업 참여 증빙 서류(수료증 등)	우대사항
	⑲ 경력 증빙, 자격증, 수상내역, 인증 및 지식재산권 등	사업역량 증빙

※ 제출서류 서명 또는 날인 필수, 미제출 서류는 모두 **0점** 처리

5 신청 및 접수

- 접수기간 : 공고일 ~ 2025. 12. 8.(월), 17:00까지
- 접수방법 : 이메일 접수(windglow@ubpi.or.kr)
 - 파일.제목명 : 울주 꿈꾸는 청년대장간 입주신청서_기업명(대표자)
- 문의처

소 속	부서	연락처	전자우편
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	기업지원부 판로개척팀	052-283-7142	windglow@ubpi.or.kr

6 추진일정

입주기업 모집	서류합격자 공고	발표 및 면접심사	합격자 공고	오리엔테이션
~ 12. 8.(월)	12. 10.(수)	12. 12.(금)	12. 15.(월)	12. 17.(수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이메일 접수 • 17시 접수 마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서류적격여부 • 공고문 게시 (심사일정 안내 포함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심사위원회 구성 • PPT 발표 7분 • 질의응답 8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고문 게시 • 개별 문자통보 (합격자에 한함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운영규정 안내 • 전대차계약 체결

※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- 선정평가 : 2025. 12. 12.(금) 예정
 - 선정기준 : 평균점수 60점 이상을 득한 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되, 동점자 발생 시 고용 인원(고용보험 가입자 기준)이 많은 순으로 선정
 - 심사내용 : 창업자 역량, 기술성·시장성, 계획 타당성, 지역경제 기여도 등

7 유의사항

- 입주신청서 작성시 제품개요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
- 공동 대표자의 경우, 대표자 이력서 각 1부씩 제출
- 입주 신청 시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철저히 검토한 후 신청서 제출

- 발표 및 면접심사는 대표자 본인이 직접 발표해야 함(불참시 심사제외)
- 신청서 상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, 신청인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
- 미제출한 서류가 있거나, 제출기준과 다른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한하여 인정(증빙자료 미제출 시 인정되지 않음)
-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입주 취소 및 계약 해지(퇴거), 지원금 환수, 사업참여 배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짐에 유의
-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경우, 입주종료일까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성과 점검 등에 반드시 응해야 함
- 신청기업 중 적격기업이 없으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- 기타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관련 지침을 따름
- 기타 사항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 있음

- 붙임 1. 창업 제외 업종 1부.
 2. 신산업 창업 분야 1부.
 3. 창업 여부 기준표 1부.
 4. 울주 꿈꾸는 청년대장간 입주 신청 서식집 1부. 끝.

붙임 1 창업 제외 업종

□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

연번	대상 업종	코드번호
1	일반유흥주점업	56211
2	무도유흥주점업	56212
3	카지노 운영업	91242
4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	91249
5	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	-

*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통계청, kssc.kostat.go.kr) 참고

▶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제5조2 제1항 및 금융위원회 「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」에 의거,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 제한에 따라 해당 업태를 영위 하는 자기업

연번	업태명
1	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
2	블록체인 및 암호화폐를 이용한 시스템 통합구축 서비스 자문, 개발 및 판매
3	가상화폐 거래소업
4	가상화폐 개발업
5	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
6	가상자산 취급업
7	가상자산의 교환, 이전, 매매업
8	암호화폐 공개(ICO) 관련한 컨설팅 및 전문서비스업

* 단, 가상자산사업자 중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를 통해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는 지원 가능

** 기준 업태는 추가·변경될 수 있음

붙임 2 신산업 창업 분야

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

[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-2호, 2022.6.29. 제정, 2024.1.30. 개정.]

제3조(신산업 창업 분야)

-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는 **별표1**과 같다.
-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정부의 정책, 창업 환경, 산업 구조 및 시장의 수요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개편할 수 있다.
- ③ 중소기업부장관은 신산업 창업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신산업의 개념 및 사례가 포함된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을 발표할 수 있다.

[별표 1] 신산업 창업 분야(제3조제1항 관련)

< 신산업 27대 분야 >		
① 인공지능	⑩ 자율주행차	⑲ 스마트홈
② 빅데이터	⑪ 전기수소차	⑳ 신재생에너지
③ 5G+	⑫ 바이오	㉑ 이차전지
④ 블록체인	⑬ 의료기기	㉒ CCUS(탄소포집·활용·저장)
⑤ 서비스플랫폼	⑭ 기능성 식품	㉓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
⑥ 실감형콘텐츠	⑮ 드론·개인이동수단	㉔ 우주
⑦ 지능형 로봇	⑯ 미래형 선박	㉕ 차세대 원전
⑧ 스마트 제조	⑰ 재난/안전	㉖ 양자
⑨ 시스템반도체	⑱ 스마트시티	㉗ 사이버 보안

붙임 3

창업 여부 기준표

신청기업구분	상세 구분		창업여부	
개인기업	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10년 (또는 7년) 이내		창업 기본요건	
	타인으로부터 상속/증여	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	창업아님	
		이종	창 업	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-	창업아님	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	이종창업	-	창 업
			폐업 3년 초과	창 업
동종창업		폐업 3년 까지	창업아님	
		부도/파산 - 2년 초과	창 업	
	부도/파산 - 2년 까지	창업아님		
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	-	창 업		
법인기업	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10년 (또는 7년) 이내		창업 기본요건	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	이종창업	-	창 업
			폐업 3년 초과	창 업
		동종창업	폐업 3년 까지	창업아님
			부도/파산 - 2년 초과	창 업
			부도/파산 - 2년 까지	창업아님
		동종전환	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	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이종창업	-	창 업
			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초과 또는 최대주주	창업아님
		동종창업	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이하 이면서 최대주주 아님	창 업
	자회사 여부	법인주주(임원 포함)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초과 소유		창업아님
과점주주 여부	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% 초과 소유		창업아님	
회사형태 변경	동종유지		창업아님	
	이종		창 업	

- ※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: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(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)이고, 양도-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, 동종 업종,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폐업 완료, 양도기업의 권리·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
- ※ 동종의 범위 : '한국표준산업분류(제10차)'를 기준으로 세세분류(코드번호 5자리)가 모두 일치하면 "동종"
- ※ 과점주주 :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
- ※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(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) : ①2020.10.8.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
 - "개인사업자 설립일이 '20.10.8. 이전이면서,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"한 경우 "창업"으로 판단
 - ②영 시행(2022.6.29.)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